



식품위생법 시행령

[시행 2019. 3. 14] [대통령령 제29622호, 2019. 3. 14, 타법개정]

○ 개정이유

이하 동문

○ 개정문

◎ 대통령령 제29622호(2019.3.14)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본문 생략]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17조제3호 중 “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”를 “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기준”으로 한다.

제63조제1항제4호 중 “법 제13조, 제37조제4항”을 “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법 제37조제4항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.

②부터 ④까지 생략

